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0

발의연월일 : 2009. 6. .
발 의 자 : 신성철 의원
외 9 인

□ 개정이유

○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영농을 위한 경우 완화하여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의 경우 2005.04.08. 조례 제1182호 일부개정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는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22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중 대부동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안 제2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제56조별표1제2호라목(1)”를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로 하며, 제1호 중 “1천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2005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 제1호 중 “1천제곱미터이상”을 “1천 제곱미터(영농을 위한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제56조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1천제곱미터 이상 2. ~ 3. (생략)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 1. ----------1천 제곱미터(2005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는 200제곱미터)--- 2. ~ 3.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 3. (생략)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1. ---- 1천 제곱미터(대부동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 2. ~ 3. (생략)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

(생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2) (이하 생략)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60

제안년월일 : 2009. 9. 1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토지분할 면적을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2005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함(안 제22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 제1호 중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1천제곱미터(2005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는 200제곱미터) 이상 2. ~ 3. (생략)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 ---------- ---------- ---------- ---------- ---------- 1. ---------- ---------- ----------500제곱미터---- 2. ~ 3. (원안과 같음)